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00.00.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2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대상에 의회 추가

나. 진출·전입 시 지방의회 인사위원회도 포함(안 제14조)

현행 공무원의 진출·전입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가 필요했던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추가

다. 통계 보고의 단계의 보고단계별 의회 통계 추가(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0월 0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61, 3342,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 · 도의회의 의장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5조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 · 도지사”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 · 도지사에게, 시 · 군 · 구의회의 의장은 시 · 도의회의 의장”로, “시 · 도지사는”을 “시 · 도지사 및 시 · 도의회의 의장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u>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제외한 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 · 도의회의 의장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제14조(전출 · 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 · 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 · 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 · 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제14조(전출 · 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① ----- ----- -----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작성하되, <u>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해 1월 20 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 고, 시·도지사는 정기보고사항 을 종합 집계하여 다음해 1월 3 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u>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 ----- ----- 다음해 <u>1월 20일까지 시장·군수·구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군 ·구의회 의장은 시·도의회 의 의장--- 시·도지사 및 시 ·도회의 의장은 ----- -----.</u>
---	--